

2021년도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

(석공내상승사:건축,건축)

구분		50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50억미만, 12개월이하(365일)	50억미만, 36개월이하(1095일)	50억미만, 36개월초과(1096일)	50억~300억미만, 6개월이하(183일)	50억~300억미만, 12개월이하(365일)	50억~300억미만, 36개월이하(365일)	50억~300억미만, 36개월초과(1096일)
간접노무비		8.0	7.9	7.7	7.7	7.6	7.6	7.4	7.3
건축, 전문	기 타 경 비	전력비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운반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지급임차료								
	보관비								
	의주가공비								
	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기계경비	실비 계산	실비 계산	실비 계산	실비 계산	실비 계산	실비 계산	실비 계산	실비 계산
	품질관리비								
	가설비	콘테이너 등 가설건물 적용	콘테이너 등 가설건물 적용	콘테이너 등 가설건물 적용	콘테이너 등 가설건물 적용	콘테이너 등 가설건물 적용	콘테이너 등 가설건물 적용	콘테이너 등 가설건물 적용	콘테이너 등 가설건물 적용
	수도광열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복리후생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소모 사무용품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여비,교통,통신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세금과공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도서인쇄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계)	5.600	5.800	7.000	7.300	6.800	7.000	8.200	8.500
	※ 산재보험료		3.7						
※ 고용보험료		1등급 : 1.39(추정금액1100억이상), 2등급 : 1.17(추정금액1100억~850억), 3등급 : 0.97(추정금액850억~500억), 4등급 : 0.92(추정금액500억~360억), 5등급 : 0.89(추정금액360~200억), 6등급 : 0.88(추정금액200~120억), 7등급이하 : 0.87(추정금액120미만)							
※ 건강보험료		3.43							
※ 연금보험료		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억미만 : 2.93%, 5억이상~50억미만 : 1.86%+5,349천원, 50억이상 : 1.97%							
환경보전비		신,증,개축 : 0.5, 조경 및 기타(전문, 개보수공사) : 0.3,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은 적용제외							
보상비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안전점검비		"	"	"	"	"	"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 × 공기(년), 최저가, 기술제안, 대형공사 적용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300억(추정가격)이상 : 0.068%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2.3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중합건설(건축공사 :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전문건설(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석공사,시설물유지관리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그 외 0.1%) 적용제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기타법정경비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일반관리비		건축 (50억미만 : 6.0%, 50억~300억미만 : 5.5%, 300억~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5억미만 : 6.0%, 5억~30억미만 : 5.5%, 30억~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이 윤		15.0				12.0			

※ □ 비목별 공사규모 및 기준을

- 0.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 > × 율
- 0. 기타경비 : < 재료비+노무비 > × 율
- 0. 산재보험료: 모든공사에 반영: < 노무비 > × 율
- 0. 고용보험료 : < 노무비 > × 율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0.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 직접노무비 > × 율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 > × 율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 0.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 < 직접노무비 > × 율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 50억미만(추정가격) : 0.081%, 50억~100억미만(추정가격) : 0.080%, 100억~300억미만(추정가격) : 0.075%, 300억이상(추정가격) : 0.068%
-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도급+도급자관급) 2천만원이상 : <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접노무비 > × 율
- 0. 일반관리비 : < 재료비 +노무비 + 경비 > × 율
- 0. 이윤 : < 노무비 + 경비+일반관리비 > × 율
- 0. 환경보전비 : <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 율
 - 환경보전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내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경비율에 환경보전비를 계산할 수 없음
- 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 :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율
- 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4백만원+ < 직접공사비-140억원 > × 0.0193%] × 공기(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시(관급자재 계산시)

- (예시 1): 재료비 1,000, 노무비 500, 관급자재 500 일때,
 - 가) 1,500 × 0.0293 = 43 (관급미포함)
 - 나) 2,000 × 0.0293 = 58 (관급포함)
 - ∴ 관급을 포함한 산출금액이 미포함 산출금액의 120%를 초과함으로 58원을 적용하지 않고 51원을 적용.
- (예시2): 재료비 1,000, 노무비 500, 관급자재 200 일때,
 - 가) 1,500 × 0.0293 = 43 (관급미포함)
 - 나) 1,700 × 0.0293 = 49 (관급포함)
 - 다) 관급미포함 액수 43 × 120% = 51
 - ∴ 관급을 포함한 산출금액이 미포함 산출금액의 120%이내 이므로 49원을 적용.

♣ 공사규모별(대상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 대상액 =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접노무비
- (예시1): 재료비 2억 + 관급자재비 1억 + 직접노무비 1.9억 = 계 4.9억 (5억미만 요율적용)
- (예시2): 재료비 2억 + 관급자재비 1억 + 직접노무비 2.5억 = 계 5.5억 (5억~50억미만 요율적용)